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11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2022-50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11
----------	---------

발의일자	2022. 3. 8.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나.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2조)
- 다.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마.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3. 11. ~ 3. 1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 4) 성별영향평가 :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1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

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50
----------	---------

발의일자	2022. 3. 11
발 의 자	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권순모, 박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거창사건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는 희생자가 2인 이상인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 유족의 상처치유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창사건 희생자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생활 보조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생활 보조비 지급대상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7조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지원 조례」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거창사건사업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5. ~ 3. 21.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4) 성별영향평가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생활보조비 100,000원을”을 “생활보조비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u>생활보조비 100,000원을</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유족으로서,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형제자매 <p>② <u>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u></p>	<p>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u>생활보조비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유족으로 한다</u></p> <p>② <u>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u></p>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희생자 수	등록 유족 수	지급금액	산출 내용
희생자 1명	1명	1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1명
	2명	2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2명
	3명	3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2명	1명	2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1명
	2명	4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2명
	3명	6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3명	1명	3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1명
	2명	6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2명
	3명	9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4명	1명	4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1명
	2명	8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2명
	3명	1,2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5명	1명	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1명
	2명	1,0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2명
	3명	1,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3명

[비고]

-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
- 나.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 다.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금액은 100,000원임

관련법령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等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の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1.]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79호, 2020. 5.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